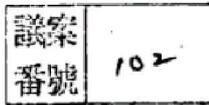


## 大田直轄市避妊藥劑器具普及

### 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提出年月日 : 1992. 3. 27.  
提 案 者 : 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政府 家族計劃事業을 圓滑하게 遂行하기 爲하여 避妊藥劑器具 普及 手數料를 引上하여 家族計劃事業 再活用費와 避妊施術 不作用 事後管理費로 使用하기 爲함.

#### 2. 主要骨子

가. 避妊藥劑器具 普及 手數料는 避妊藥 1個月分 ( 21錠 또는 28錠, 1싸이클 )을 200원에서 230원으로 引上하고 無料로 施術 하던 子宮內裝置 手數料를 1件當 2,000원을 徵收토록 하는 것임 (案 第3條)

나. 徵收처리費의 交付中에 但書規定에 子宮內裝置 手數料中 件當 1,000원을 全額 不妊施術 事後管理費로 하는 것임.

(案 第5條 但書로 함)

### 3. 參考事項

가. 保健社會部準則 : 家族保健 31141-31 ('92. 2. 12) 호 및  
31141-53 ('92. 3. 12)

나. 立法豫告

1) 期 間 : '92. 2. 29 ~ 3. 19 (20日間)

2) 方 法

○ 市 公報揭載 ('92. 2. 29 第56號)

3) 內 容

○ 條例改正 趣旨

4) 豫告結果 : 市民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1인당 1개월분 먹는피임약(21정 또는 28정, 1싸이클)의 수수료는 230원, 콘돔1갑(6개입)은 200원, 자궁내장치 1건 시술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다만,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 계획 협회 직원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먹는피임약은 330원, 콘돔은 3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100원은 실제 보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자궁내장치의 수수료중 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 관리비로 사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수료) 1인당 1개월분 (먹는피임약 21정입 또는 28정입, 1싸이클, 콘돔 6개입 1갑)의 수수료는 이를 각 200원으로 한다. 다만, 가족계획요원, 직원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3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300원중 100원은 실제보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p>	<p>제3조(수수료) 1인당 1개월분 먹는피임약(21정 또는 28정 1싸이클)의 수수료는 230원, 콘돔1갑(6개입)은 200원, 자궁내장치 1건 시술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다만,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직원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먹는피임약은 330원, 콘돔은 3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100원은 실제보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p>
<p>제5조(생략)  (신설)</p>	<p>제5조(현행과 같음)  다만,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로 사용한다.</p>